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
[시행 2024. 10. 25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13호, 2024. 10. 23., 일부개정.]

보건복지부(기초의료보장과), 044-202-3098

【제정·개정문】

⊙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13호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8호, 2024.7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4년 10월 23일

보건복지부장관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별표1의2 다목의"를 "별표 1의2 제1호마목의"로 하고, "응급의료 취약지란 「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고시」"를 "의료취약지란 「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」"으로 한다.

제17조의10은 삭제한다.

제1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14(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) ①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서의 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"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치료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.

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(9) [요양병원 정액수가 등] ② 중 "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"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"의 (Ⅰ)란에 기재하되"를 "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장 [산정지침] 2.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, 제3편제2부제2장 [산정지침] 2.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, 제4편제2부제1장 [산정지침] 5.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. 장기요양 ① (Ⅰ)란에 기재하되"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, 제6호서식,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생략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급의료수가의 적용례) 제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임종실정액수가의 적용례)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(9), 별지 제4호, 제6호,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제ㆍ개정 이유

○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, 건강보험 수가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청구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○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제19조 [별표1의2]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055호, 2024.9.13. 시행)에 따른 조항 변경

○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개정(대통령령 제34928호, 2024.10.12. 시행)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

○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5호, 2024.8.1. 시행) 신설에 따른 의과ㆍ치과ㆍ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